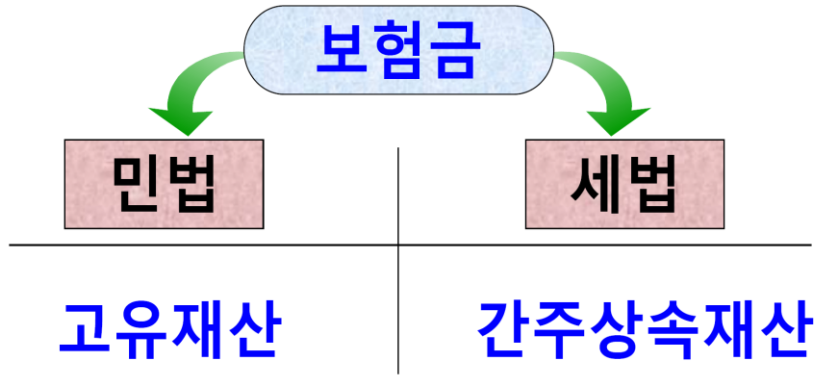


# 보험 수익자 지정의 효과



→ 상속재산 아님

→ 상속재산임

보험의 수익자는 상속 포기시에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.

보험의 수익자는 재산 분할 분쟁이 발생해도 분쟁과 무관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.

특별한 사람에게 더 많은 자산을 물려주고 싶으면 보험의 수익자를 활용하면 된다.

구분	내용
대법원 판례*	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 계약의 경우,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<b>상속인의 고유재산임</b>
상법 제733조	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해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어 <b>생명보험금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임</b>

\*대법원 판례 :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19다300934 판결, 대법원 2007.11.30. 선고 2005두 5592 판결 등

## ※ 보험수익자의 표기와 상속재산의 여부

- '상속인 A'라고 표기
  - '상속인'이라고만 표기
  - '공란'으로 미지정
  - '보험계약자'로 지정
- } 상속인의 고유재산